

나눔터

펴낸곳: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날: 1994년 2월 5일/ 계간발행/ 주소: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우. 137-600)/ 전화: 02) 576-7127~8



최영애 소장 여성동아대상 수상식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차 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2	연령별 성교육(이미경)	10
이렇게 생각한다/ 직장내 성희롱	3	내가 생각하는 성(이숙경)	11
여기는 상담실	4	미리보는 상담소	
이렇게 도왔습니다	5		
지상상담		나눔터 애깃글(공선옥)	12
더좋은 상담을 위하여	6	성문화 읽기/그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류선자)	13
어린이 성폭력예방 비디오를 보고	7	이렇게 일한다	14
비디오 구입 요령			
특집:성폭력 특별법 (최영애)	8	위기센터	15
인터뷰: 이종걸 변호사		나눔터 알림판	

성폭력 특별법 통과

성폭력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여성계가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년간의 노력 끝에 이룬 성과이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여성계는 기존의 형법보다는 개선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 법관행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은 문제는 올해 4월 1일 시행되기 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얼마만큼 여성계의 요구를 담아내는가이다.

최영애 소장 제11회 ‘여성동아대상’ 수상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이 국내 최초로 성폭력상담소를 열어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은 물론 성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공로로 동아일보사에서 수상하는 제 11회 ‘여성동아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주목할 만한 사회 활동을 한 여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 1984년 아래 매년 실시되고 있다.

수상식이 있었던 지난 1월 14일 동아일보사에는 여성단체 관계자, 동아일보권오기 사장과 임직원, 상담소의 상담원·나눔이·지킴이 등 많은 이들이 모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식



▲ 제4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식

성폭력위기센터 개설식이 지난해 12월 13일 기독교연합회관 소강당에서 있었다. 국내에서 처음 실시되는 위기센터는 위기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돋는 것은 물론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권영자 정무 제 2장관, 이우정 민주당 국회의원 등 각계의 여성인사가 참여한 이 행사에는 위기센터가 여성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로 가득했다.

어린이 성폭력 예방비디오 시사회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어린이 성폭력 예방 비디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시사회가 지난 12월 19일 동숭동 인켈 아트홀에서 있었다. 본 상담소가 1년 동

안의 준비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 낸 이 비디오는 유치원생과 국민학생들의 성폭력 예방 교육용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제4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지난해 10월 15일 시작되어 여성학과 상담학 과정을 모두 마친 제 4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이 12월 16일에 있었다. 이번에 수료한 22명의 4기생은 한달간의 실습 교육을 마치고 2월부터 성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성폭력 위기센터 숙박교육 실시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 준비를 위한 지킴이 교육과 상담소 겨울 숙박교육이 지난 해 11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한국여성개발원 후원으로 종로5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다.

상담원과 나눔이, 지킴이까지 상담소의 모든 가족이 참여한 이번 숙박교육은 위기센터 개설을 위한 준비의 자리가 되었다.

상담소 잔치

상담소 집들이, 최영애 소장 여성동아대상 수상 축하, 1994년 새해 시작을 위한 잔치가 1월 22일 상담소에서 있었다. 강기원 대표이사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잔치는 상담원, 발기인, 나눔이, 지킴이 등 70명의 상담소 식구가 모인 흥겨운 자리였다.

직장내 성희롱

최 은 순 (변호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올 4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 그 사안의 중요성과 본질에 대한 남녀간의 견해차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여성측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폭력 내지는 희롱과 학대로 받아들여서 그 행동을 문제삼으면 그 여성은 조잡하고 치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사회부적응자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다. 성희롱은 '남을 때리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명제와 같이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상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 성적 요구, 기타 성적 내용의 언어 또는 행위는 위법한 성희롱(내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말이다.

우리나라 법에는 성희롱 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미국처럼 성희롱 행위를 공민권법 제7편 703조 고용 조건에서의 성차별에 관한 위반 행위로 들고 있는 EEOC (고용기회균등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본질을 드러내고 공론화시키며, 그 예방책의 제시 및 제도화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의 개념을 세워 교육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예방하여 성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 여성만을 피해자로 놓을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직장내의 성차별 문제로 인식시키고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을 정비해 나갈 것, 즉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성차별 문제와 근로조건의 문제로서 명확히 하여 사용자의 예방 의무와 결과회피 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는 방법을 우선 들 수 있겠다.

사용자의 의무로 적시되어야 할 것은 성희롱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교육시킬 의무, 고충처리 기관의 설치 운영, 신속한 조사와 이에 근거한 시정조치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우리나라로 작년부터 UN의 여성지위향상위원회의 위원국이 되지 않았던가? 예방이 제일이다. 법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예방의 주된 수단이 될 것이며 성희롱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토양

강 학 중 (대교출판 대표이사)

'직장내의 성희롱', 어떤 것이 성희롱이고 어디까지가 친근함의 표시일까?

이 땅에는 대화의 문화가 없다. 특히 '성희롱' 같은 예민한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더더욱 아니다. 쑥스럽고 어색하기 때문에 덮어두고 그저 피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의 강과 벽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발견할 수 있으리라.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남성들의 성에 관한 통념에 대해서는 남자인 내가 보기에도 답답할 때가 많다. 생각없이 던진 말 한 마디가 상대 여성에게 얼마나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던 남성의 호의를 그렇게까지 공격적, 전투적으로 적대시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도 대화를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직장동료나 상사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내 생각을 밝히는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들을 위한 성교육도 생각해 봄직하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실질적인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앞만 쳐다보고 고도성장을 위해 뛰어왔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희롱' 같은 문제는 목표달성을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여성의 인권 따위는 오히려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이제 보다 즐거운 직장을 위해,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다.

'성희롱' 같은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는 토양 속에서 '성폭력'은 항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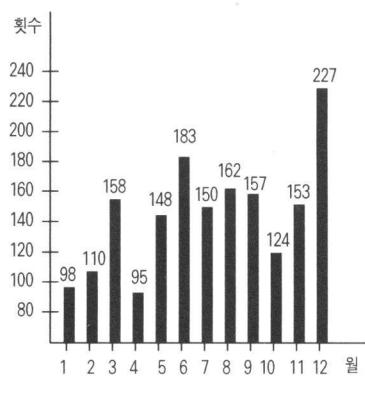
성폭력!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상담 : ☎ 529-4271~2

위기센터 : ☎ 573-1888

지난 93년 한 해 동안 본 상담소는 총 1천 7백 6십 5회에 걸쳐 1천 1백 8십 2건의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성폭력 피해 상담은 841건이었다.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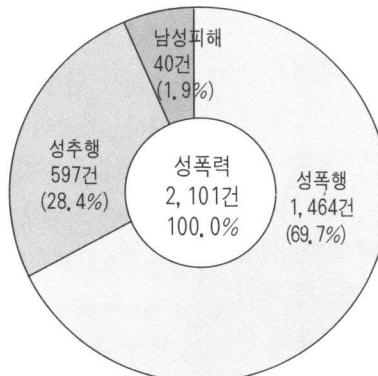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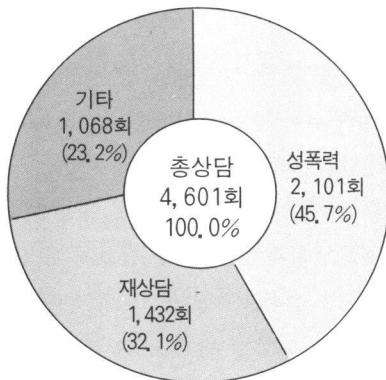
월별 상담추이는 (그림 1)과 같다. 12월에는 상담 횟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12월 13일 위기센터 개설 이후 위기상담 외에 일반상담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1〉 상담 현황

1993년 1월 ~ 1993년 12월

유형	가해자	피해자				미상	소계		
		성인(20~)	청소년(14~19)	어린이(8~13)	유아(0~7)				
성폭행	아는 사람	친족 13.3%	아버지·오빠 친인척(7.0%)	3	19	23	7	1	53
		동네사람(6.3%)		16	24	14	8		59
		데이트상대(4.1%)		21	10	11	9	1	53
		직장상사·동료(9.7%)		31	6			1	34
		교사·강사(1.4%)		68	4		3	81	
		기타(9.6%)		1	10	1		12	
		모르는 사람(12.0%)		60	11	5	3	3	81
		미상(3.9%)		5	13	4	4	2	33
		윤간(4.6%)		15	24				39
		친족 4.2%	아버지·오빠 친인척(1.6%)	2	3	14	2	1	22
성추행	아는 사람	동네사람(5.4%)		6	1	2	4		13
		데이트상대(0.1%)		4	1	12	28		45
		직장상사·동료(2.0%)		1				1	
		교사·강사(2.1%)		17				17	
		기타(3.3%)		3	4	9	1	1	18
		모르는 사람(3.9%)		18	1	4	3	2	28
		미상(1.1%)		11	1	13	6	2	33
		강간미수(4.1%)		28	2	3			34
		언어추행(6.3%)		43	1	3		1	53
		남성피해 22 (2.6%)		8	9	3	2	6	22
기타	성문제·순결	(44.3%)		105	36	3	4	3	151
		인신매매 (2.1%)		1	4			2	
		아내구타 (3.8%)		12				1	13
		혼인빙자 (6.4%)		21				1	22
		장난전화 (5.6%)		9	6			3	19
		기타 (37.8%)		89	34	1	1	5	129
341	계			237	80	4	5	15	341
		합계(건수)							1,182
		재상담							583
		총계(횟수)							1,765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타 상담으로는 순결이나 성문제가 44.3%로 가장 많은데 이는 우리사회의 이중 성윤리의 극복과 함께 올바른 성인식의 확립, 그리고 건강한 성지식의 습득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보여 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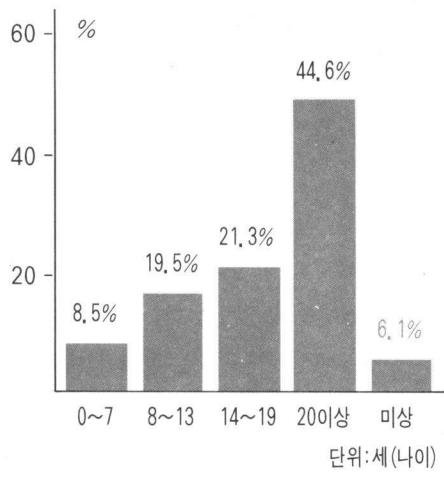
한편 91년 4월 개소이래 지난 93년까지는 총 4천 6백 1회에 걸쳐 3천 1백 69건의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성폭력 피해상담은 2천 1백 1건이었다. (그림 2)

성폭력 상담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강간과 윤간을 포함한 성폭행이 69.7%, 강간미수와 언어추행을 포함한 성추행이 28.4%, 남성피해가 1.9%를 차지하였다.

피해자의 연령은 (그림 4)와 같이 20세 이상의 성인이 44.6%, 14세~19세 청소년이 21.3%, 8세~13세 어린이가 19.5%, 0세~7세 유아가 8.5%, 미상이 6.1%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체 피해자의

2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2월 13일 위기센터 개설 이후 연말까지 2주 동안 10건의 위기상담이 접수되어 증거 채취 및 치료가 행해졌으며, 고소 및 가해자 검거 뿐 아니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위기센터의 기능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활발한 위기상담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위기상담

지난 해 12월 29일 오전 9시경 위기센터에는 다급한 목소리의 위기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전날 8시에서 9살, 11살된 두 딸이 20대 청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가해자는 아이들을 협박하여 다음날 그 장소로 다시 나오라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상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당일 4시경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이 사례는 경찰에 연계하여 가해자를 검거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의 불안을 덜어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위기센터의 기능을 실감케 했다.

어린이 성폭행 후유증

현재 중3인 박양은 지난 여름 외갓집에 놀러갔다가 고등학생인 외삼촌이 폭행하려는 것을 뿌리친 뒤 유치원때부터 3년간 당시 중학생인 사촌오빠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 이후 남자들에 대한 분노, 자포자기 등으로 학업에 흥미도 잃게 되었다. 상담소에서는 의료적이고 법률적인 조치보다도 성폭행에 대한 기존통념을 깨고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도록 돋는 심리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다. 또한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친척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상담으로 이끌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직장내 성폭행

직장상사가 성실하게 일해 온 여성을 계획적으로 구타,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행동이 바르지 못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서로 결혼하려 했다는 등 피해자 부모에게 충격을 주어 합의하려 하였다.

고소한 후에 피해자의 이모를 통하여 상담이 시작되어 상담소에서는 담당판사에게 진정서를 보냈고 지속적인 전화, 면접상담을 통하여 피해자를 돋고 있다.

1심에서는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가해자측에서 항소하여 2심 계류 중이다.

이렇게 도왔습니다

지상상담

고소하려고 합니다

정화순 (2기 상담원)

문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인데 한달 반 전에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사장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회식을 한 후 마무리 할 일이 있다며 둘만 남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등록금 마련 때문에 일은 그만두지 못했고 최근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전 낙태를 했습니다. 그 후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여럿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강간 당했을 때 도망치려고 얼굴등을 맞아 멍들었는데 이미 흔적은 없어졌고 옷이나 증거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강간당한 다음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제가 맞고 멍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있는데 같이 고소하면 어떨까요?

답 늦게나마 고소를 결심하셨는데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일단 강간 당할 때 구타당한 것을 증명해 줄 증인들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고, 몸의 명이나 상처 등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타

를 당한계 증명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됩니다.

가해자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만날 경우에는 가해자가 강간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을 녹음하십시오.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과 연대하여 고소하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강간 당했을 때의 상황과 느낌 등을 자세하게 적어두시면, 나중에 피해자 진술 때나 재판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찰에는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냅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한 경우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성의 이중규범으로 경찰 수사나 재판시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며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있는 고소는 가해자를 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성폭력 범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심리적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용서할 수 없어서 고소를 하겠다는 당신의 말에서 자학하지 않고 당당하게 분노를 발산하는 정당하고 건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위기상담

조 중 신 (상담부장)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세탁하거나 버리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몸을 씻지 말아야 함을 숙지시키고, 증거채취나 고소할 때 상담원이 도와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지난 해 12월 13일에 개설한 성폭력 위기센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위기상담을 받는다. 위기상담이란 원칙적으로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 24시간 이내에 도움을 요청한 상담을 말하지만, 피해를 입은 지 48시간이 안되어 증거채취가 가능한 강간, 강간미수, 추행 등에 대한 상담도 포함된다.

'위기'란 평상시의 적응방법이나 생활방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만큼 심리적인 긴장을 느끼는 상태로서 특히 성폭력을 당한 내담자는 공포, 신체적인 상해, 가족이나 가해자와의 관계에 의해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으므로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위기상담에 임하는 상담원에게는 안정되고 침착한 태도와 순발력이 필수적이다.

1. 위기상담전화를 받았을 때

상담원은 우선 내담자가 언제 어떤 유형의 성폭력을 당했는가, 상태는 어떤가, 안전한 장소에 있는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고소를 원하는가, 위기센터에 오거나 병원에 갈 수 있는가 등을 차분하게 묻는다. 이때에는 비밀이 보장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세탁하거나 버리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몸을 씻지 말아야 함을 숙지시키고, 증거채취나 고소할 때 상담원이 도와줄 수 있음을 알려준다.

본인이 아니고 어린이 피해자의 부모나 친구 등이 대리상담해 온 경우 그들도 당혹과 혼란으로 흥분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어 진정시킨 다음 그들이 피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내담자를 직접 대면했을 때

내담자가 위기센터로 오면 우선 내담자와 동행인의 감정적 반응을 주시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증상을 나타내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행동했

다는 것,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나 남편, 또는 친구에게 이끌려 내담하게 된 경우에는 대화를 거부하고 침묵하거나 울기만 할 수도 있다. 가족의 반응에 피해자가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가족에게도 적절한 상담을 해주며 성폭력 관련 자료를 읽도록 권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내담자에게 필요한 의료 검사의 종류를 설명하고 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가를 설명한 후 위기센터 위촉의는 성폭행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잘 처리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그리고 증거채취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증거채취실에서 사진촬영을 한다. 위촉의가 도착하면 피해자로부터 들은 증상과 상해, 느낌을 의사에게 미리 얘기한다. 또한 위촉의를 도와 증거채취를 보조하며 채취 후 검사기관에 보낸다.

증거채취나 응급치료가 끝나 내담자가 어느 정도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면 마무리로 심리상담을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심리적 문제들을 설명해 주고 후유증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상담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또한 현재 상황 이전의 병력이나 가족관계, 이성관계 등 내담자가 염려하는 문제에 친절하게 대답해 준다. 지속적인 치료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성병이나 임신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후속적인 병원 치료가 있을 경우는 그 때가 언제인지 상기시킨 후 전화하도록 약속한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경우 고소절차에 대한 정보를 주고 경찰과 연계하며 상담소에서 도울 수 있음을 알린다. 증거채취물은 검사실에 의뢰하여 결과를 알아본다. 그리고 고소했을 경우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담자의 심리 회복을 위해 지속상담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이명화 (YMCA 청소년 상담실)

어쩌다 상담실에서 5, 6살된 딸아이가 동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전화하는 엄마의 상담을 받는 날이면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이 천진난만한 어린애에게 어떻게 성폭력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등. 그런데 이런 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답은 바로 “내 몸은 내가 지켜요”라는 비디오이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바로 이거다! 3살 아니, 2살 짜리라도 논리적인 이해력은 어른과 다를 지 모르지만 느낌만은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성폭력의 실마리를 논리가 아닌 감정으로 풀어 나갔다는 것은 어린이 정서에 유효적절한 접근이었다고 생각한다.

2부 “잠깐 생각해 봐요”에서는 “남자도 똑같아요”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선생님의 말은 성폭력에 대해 갖게 되는, 기존의 여자들만 피해자라는 생각과 다르게 남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3부 “이런일은 하지 말아요”에서는 예방교육을 피해자 입장만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용 교재로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구성이나 상황설정이 좀 더 어린이의 관점이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예방접종을 맞듯이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3명의 어른들이 동시에 선생님 역할, 상황설정의 등장인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기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또 유치원 내에서 모든 상황을 재현하였고 행동이 불분명한 인형극으로 보여 주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느끼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이 비디오를 보고난 후 내 느낌은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비디오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다. 비디오에서 보여진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에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았다. 내 눈에 비쳐진 아이들에게 성폭력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을 뿐이다.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심경남(전인유치원 원장)

“성폭력이 뭐예요?”

각종 성범죄가 난무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귀에도 성폭력이란 단어가 딱지처럼 앉아버렸나 보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못 진지하게 물어온다.

아이들의 말로 쉽게 이해시키려고 대답을 해주긴 하지만 늘 답답했었다. 성폭력이란 말을 이해시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이다.

이러던 차에 “내 몸은 내가 지켜요”라는 성폭력 예방 비디오를 접하게 되었다. 너무도 반가운 마음에서 어머니들을 초청하여 함께 보았다.

딱딱한 내용이려니 지레짐작 했었는데 인형극과 노래로 되어 있어 재미있었다. 아이들은 비디오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인형극과 노래가 나오니 좋아라 했지만 그래도 건진게 하나 있는 모양이다. “성폭력이란 뭐지?”라고 물으면 “싫은 느낌이요!”라고 크게 말한다.

어머니들은 비디오 내용이 평상시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들 하셨다. 그렇지만, 성폭력의 예방은 자기의 느낌을 정확히 말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근본적인 지침을 얻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내 몸은 내가 지켜요.”는 ‘밝고 맑고 아름답게’ 자라나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폭력에 의해 상처나고 찢기는 모습을 매스컴을 통해서 대할 때마다 탄식만 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게 해 준 고마운 비디오였다.



△ '내 몸은 내가 지켜요' 중에서

비디오를 구입하려면… ●가격 : 18,000원 / ●상영시간 : 30분 / ●대상 : 유치원, 국민학교 학생

1.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접 구입이 어려운 경우 우송료 2천원을 포함하여 2만원을 온라인으로 보내 주시면 입금이 확인되는 대로 등기우송해 드립니다.

온라인구좌번호 / 국민은행:009-01-1176-632 농협:037-01-194301 받는 곳 / 한국성폭력상담소
구입문의 / 576-7127~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내용과 문제점-

최영애 (본 상담소 소장, 성폭력특별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처벌,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함께 수립된 최초의 종합 대책이란 측면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성폭력 범죄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크게 미흡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적극 보완되어져야만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을 갖게 되리라 본다.

여성계가 3년동안 총력을 기울여 왔던 성폭력특별법이 1993년 12월 17일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어 1994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성폭력 해결의 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잘못된 통념에 입각한 현행법과 수사관행, 피해자들의 권익 회복을 위한 사회제도적 대책 하나 없는 현실이 성폭력을 은폐,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라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계가 현장 경험에 입각하여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률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여성계가 가장 문제 삼았던 핵심 사안들을 거의 받아 들이지 않았다.

첫째,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성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로 두었다. 그동안 성폭력을 폭력 범죄가 아닌 정조에 관한 범죄로 인식케 하고 보호받을 정조와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정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유발시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음에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다.

둘째, 친고죄 폐지에 관한 것으로, 친족에 의한 강간, 신체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만을 기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하는 성폭력과 함께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그외는 그대로 남겨 두고 있다. 친고죄의 존폐여부는 성폭력을 어떤 범죄로 인식하는가의 문제로서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을 개인적 차원의 범죄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범죄, 대여성인권침해 범죄로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이었으나 부분적 폐지에 그치고 말았다.

셋째,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죄라는 개념을 불식시키는 '비

동의간음죄'가 신설되지 않았다.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저항여부로 성폭력의 진위를 판단함으로써 여성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많은 강제적 성폭력(특히 데이트강간, 직장내성폭력에서 많이 나타남)이 처벌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이 남겨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핵심사항 외에도 성폭력 범죄 처벌 또는 형벌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위한 시도가 없다.

성폭력 범죄 유형에 있어서 성희롱에 관한 규제가 배제되었으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조항이 누락되었다. 또한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매우 중요한데도 기존 법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다.

우선 개괄적으로 이번 법안의 구성을 보면 이 법안은 총 4장 37조로 되어있다.

제 1장은 '총칙'으로 이 법안의 목적과 성폭력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며, 제 2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등'으로 주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피해보호에 관한 조항과 상담소 설치 운영등에 관한 것이다. 제 4장은 별칙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규제 조항으로 되어있다. 제 4장은 현재와 같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법의 운용에 따라 민간 여성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나름대로 새로 신설되거나 기존 법안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조항들도 있다.

첫째, 기존의 형법에서 배제되었던 성폭력 범죄 유형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 7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제 8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제 13조), 통신매체 이용 음

란죄(제 14조)가 신설되어 그동안 법적제재나 처벌이 어려웠던 범죄 유형들이 처벌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둘째, 상담소의 설치(제 23조), 보호시설의 설치(제 25조), 경비의 보조(제 30조) 등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대책을 미흡하게나마 명시해 놓고 있는 점이다.

세째, 가해자 처벌규정에 있어서 형벌제도 이외에 보호관찰(제 16조), 보호감호(제 17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점이다.

네째, 피해자 보호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제 21조), 심리의 비공개(제 22조) 제도를 도

입하고 있는 점이다.

다섯째, 보건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치료 등의 의료 보호(제 33조) 조항이 새로 도입된 점 등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특별법은 내용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처벌,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함께 수립된 최초의 종합 대책이란 측면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크게 미흡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적극 보완되어져야만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실효성을 갖게 되리라 본다.

현장 인터뷰



이종걸

(변호사, 여성계 성폭력특별법 법안 작성위원)

현재 변호사로서, 본 상담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이종걸변호사는 1992년 3월부터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이하 성특위)와 함께 성폭력특별법시안 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온 한 사람이다. 특별법이 통과된 후 이종걸변호사의 소감을 들어본다.

- 성폭력특별법(이하 특별법)시안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관찰시키고 싶었던 시안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정부 내의 일정부서에 속해 있으면서 성폭력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집중시킬 수 있는 기관인 ‘성폭력특별위원회’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이곳에서 작성한 조사서류가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었을 때 증거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상정한 것이었는데 행정의 대대적인 개편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법안 통과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 이번에 제정된 특별법은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그간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여성계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직 친고죄로서의 기본 성격이 남아 있고, 피해자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법적인 배려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 등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지만 사회복지법 부문에서는 비교적 성특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민간여성단체에서도 상담소를 설립, 운영케 한 점이나 국·공립보건소 진료요청 요구권, 국가보조권 등이 신설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앞으로 법안의 후속작업으로 진행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여성계가 요구해 온 내용의 많은 부분이 담겨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할 내용이므로 아직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수는 없지만 총칙과 제 1장, 제 2장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될 폭이 좁기 때문에 제 3장에서 사회복지법의 이념을 충분히 살려 특별법의 기본 골격에 해당되는 각 조항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합니다.”

일반 기업체같으면 퇴근시간이 훨씬 지난 늦은 시간에, 하루종일 법률사건에 지친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또 한건의 법률사건을 대하듯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한 이종걸변호사는 “대개의 특별법이 제정된 후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장식적인 법률로서만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성폭력특별법은 그 중요성이 큰 만큼 제정 후에도 많은 여성단체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만 법이 생명력을 지닐 수 있음”을 힘주어 강조했다.

나눔터 그림

반쪽이



적어도 피임은 책임지는 멋진 남자!

이 미 경 (단국대 여성학 강사)

우리의 할머니 세대만 해도 과학적인 피임방법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전통적인 방법들에 의지하다가 실패하여 '덜컥 애가 들어서면'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간장을 마셔 뱃속의 아이를 유산시키려 했다는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구의 증가를 막고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피임방법이 연구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이후 "가족계획"이란 이름으로 강력한 피임정책을 펴오고 있다. 그리하여 요즘의 젊은이들은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피임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접하고 있다.

하지만 그 옛날의 할아버지들은 물론이고 요즘의 젊은 남자들 중에서도 "피임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명이나 될까? 생물학적으로 임신, 출산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여자니까 피임도 당연히 여자의 책임인가? 우리나라 결혼한 부부들의 피임실천 방법을 보면(199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 피임약, 질정제, 루프, 난관수술 등 여성의 참여가 전체의 73%이다. 이것을 보아도 피임에 대한 여자의 책임이 "여자가 법도 제대로 못해?"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여자가 피임 하나 제대로 못해?"로 이야기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임은 자녀의 터울이나 출산시기의 조절을 위해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의도적인 행위이다. 성관계의 결과로서 아이를 낳는 것을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임은 필요하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피임은 매우 중요하다.

피임이나 임신, 출산 등에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자율적인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자녀와 1,2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역할과 삶의 차이는 엄청나다.

직장을 포기하는 등 삶의 계획을 바꾸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혹시 피임에 실패해 한두 번 인공유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은 성관계 자체가 공포스럽기까지 하다고 호소한다.

이처럼 여성의 생애에 커다란 영향력을 갖는 피임이 왜 아직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불완전하

고 부작용이 많은 현재의 피임법 자체의 문제, 실적위주로 시행되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정책의 문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성교육의 부재 등 제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와 함께 피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들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성은 우리가 갖는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고, 성의 목적이 출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임행위는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피임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성관계 이후 여성의 몸의 변화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둘이 아무리 임신을 원하지 않더라도 배란기의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수정, 착상의 과정을 거쳐 임신, 출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남녀가 함께 성관계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결과는 다를 수 밖에 없는 여성 몸의 현실이다.

그리고 '설마 오늘은' 이란 방심과 '콘돔을 쓰면 코트를 입고 목욕탕에 가는 것 같아서...'라는 남자들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동안 150만 건의 인공유산을 하는 부끄러운 기록을 갖고 있다.

셋째, 피임은 남녀 모두의 책임이며 성관계의 한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성관계가 서로의 몸과 마음을 함께 하는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라면 당연히 피임도 그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네 책임, 내 책임'을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느낌 등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연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임신과 출산을 맡고 있는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남성들의 이해가 높아져서 "적어도 피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멋진 남자(?)들이 늘어난다면 좀 더 따뜻하고 정겨운 성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일기장은 내친구

이 숙경 (여성사 편집위원)

여성학을 한다는게, 성에 대해 공부 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으로 느끼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진 것일 수도 있다. …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성, 사랑, 결혼에 대한 불투명한 그림들이 되살아남을 느낀다. 그리고 아직도 내 삶속에 엉킨 채 남아있는 모순도……

나는 가끔 도발적으로 지난 날의 일기장을 뒤적이는 버릇이 있다. 맛있는 과자를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 두고 야곰야곰 집어 먹듯이, 지난 시간들의 단편을 다시 펼쳐 보면서 그때의 가슴앓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는 신기한 맛을 즐기는 것이니, 일종의 취미라고나 할까.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적은 일기는 3권의 일기장 안에 모두 들어있다. 그 안에는 일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에서부터 성, 사랑, 가족, 일, 글쓰기, 영화감상 등등 다양한 내용이 들어 있다. 글맛이 빠어난 명작은 아닐지라도 ‘음, 내가 이랬었구나’는 생각도 들고 가끔 운이 좋으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개인적 고민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는 때도 있다.

지난 일을 살펴보니 성문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들이 가끔 눈에 뜨인다. 친했던 대학동기가 내게 가해온 성희롱 사건. 이때 일기를 보니 ‘여성학 광신자’(이때 난 여성학과 1학기였다)답게 극단적인 처방으로 해결해 놓고 혼자 좋아하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동기와 선배들을 모두 모아 문제를 공식화시키고 범인(?)인 동창으로부터 공식사과를 받아냈다. 나는 스스로가 대견스러웠지만 그 친구는 이 일로 큰 상처를 입었다.

그 다음 기록은 성연구 수업시간에 느꼈던 회열과 해방감, 그리고 몇몇이 모여 성에 대해 세미나를 하면서 터뜨리기 시작한 ‘성에 관해 말하기’에 대한 것들이다. 버스안에서 자신

도 모르게 ‘삽입’, ‘전희’, ‘처녀막’, ‘순결이데올로기’, ‘낙태’ 등등의 단어들을 마구 섞어 열띤 논쟁을 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신나고 후련하게 속엣것들을 털어놓는 과정이 지난, 논문학기 초반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어떤 모임에서 만난 50대의 남자가 ‘낙태’가 여성학적이지 못한 주제라고 말했다. 난 더이상 캐묻지 않았다…”(1982년 10월 어느날의 일기중에서)

예전같으면 상대를 설득하느라고 야단이었을 텐데… 이때 일기를 보면 무턱대고 논쟁을 벌이지 않는 성숙함(?)을 느낄 수 있다. 달리 보면 여성학을 한다는게, 성에 대해 공부 한다는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으로 느끼면서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진 것일 수도 있다. 가장 최근의 일기 한 도막은 이렇다.

“…00특강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성, 사랑, 결혼에 대한 불투명한 그림들이 되살아남을 느낀다. 그리고 아직도 내 삶속에 엉킨 채 남아있는 모순도…”(93년 12월)

어쩌면 난 요즘 들어서야 내 문제를 담담하게 볼 수 있게 된 건지 모른다. 예전엔 자기 문제를 볼 수 있는 여유 조차 없었다. 자꾸만 외부로 향하는 시선, 비판, 이런 것들이 내 시야를 좁게 했던 것은 아닐까? 일기장에 듬성듬성 적혀있는 문장들 속에서 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린다.

미리보는 상담소

2월 정기총회

- 신년 자문위원 모임
-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
- 성문화 읽기 비평 모임

3월 제 5기 성폭력 전문 상담원 모집 및 교육

- 위기센터 제 2기 지킴이 모집
-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
- 성문화 읽기 비평 모임
- 사례연구모임

4월 개소 3주년 기념행사

- 위기센터 제 2기 지킴이 교육
- 더 좋은 상담을 위한 모임
- 성문화 읽기 비평 모임
- 사례연구모임

억울할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공선옥(소설가)



오랜만에 대학씨클 동기들을 만났다. 남자와 여자가 섞인 모임이었으므로 당연히 '남자, 여자 이야기'가 나올 만한 자리였다.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같은 씨클에서 싱그러운 토론도 하고 고상한 고민도 함께 하던 친구들이었으므로.

우리들 만남의 서두는 뿌듯하게 즐거우리라는 예감에 밝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아하, 분위기가 좀 이상하구나' 하고 알아차린 것은 모임이 거의 파할 무렵이나 되었으니… 그래도 처음에는 설마설마 하였다. 같은 씨클 활동을 하면서 대학시절을 보냈기에, 그래서 일단 각자의 인간성에 대한 신뢰는 아직 간직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김윤수의 말이 그다지 모욕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었다. 원래 못마시는 술을 억지로 마신 때문이었을까?

같은 씨클 동기였던 경희와 선배 종완씨의 이혼 그리고 경희의 재혼에 대하여 대학병원 수련의로 있는 김윤수가 말했다.

"야야, 경희 개 말야. 여자가 어째 그럴 수 있나? 애를 종완형네 집에서 키우게 하고, 엄마가 그럴 수 있는거냐? 재혼하면 애하고는 끝이잖아."

"그게 어떻게 끝이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박미숙이 물었다.

"생각해 봐라. 종완형 씨가 김씬데 이씨네로 호적이 옮겨지면 끝이잖아." 또 다른 남자동기가 김윤수를 거들었다.

"정말 경희, 생각보다 독한 데가 있어. 여자가 그렇게 독하면 남 보기애 안좋은데 말야."

"이혼과 재혼이야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경희는, 솔직히 보기좋은 모습은 아니야."

"종완형이 몇 번이나 재결합하자고 했다며?"

"그걸 경희가 거절하고 보란 듯이 재혼하는거야? 애까지 있는 여자가 왜 그러느냐?"

"냅둬라. 사랑이 있고 없고의 차인가부지 뭐."

"지금 경희 입장이 사랑타령할 입장이냐? 그러면 애는 어떡하구. 애 의사와는 상관없이 엄말 영영 못보는거잖아."

박미숙이 참다참다 못참아하는 소리로 한마디 물었다. '찡고 까부는 남자들'에게.

"그럼, 종완형은 보기 좋아서 지금 떠드는 거야?"

"당연하지, 애한텐 엄말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니들 여자들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 말은 안했지만 솔직히 우리 남자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들이냐, 남자에겐 여자가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거야."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필요로 하는건 왜 보기 안좋은거지? 남자에게도 여자가 필요한 것이 당연시 된다면 말야."

"야, 솔직히 근데, 경희 저도 양심이 있다면 말야……"

"그 뒤는 왜 말 않지?"

"야, 박미숙! 너 그런데 왜 자꾸 시비조나? 오랜만에 만나서."

인턴 김윤수와 교사 박미숙이 그렇게 시비조로 붙고 있는 사이 나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상하게 피곤해서 택시를 탔다. 합승이었다. 택시를 타고 나서야 미숙이에게 미안해졌다. 그러나 미숙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그 자리의 불편함이 나를 압박해오는 것 같았다. 아, 불편함. 그 불편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생각에 빠져있는데 운전수가 해해거리며 말했다.

"아가씨들 저거봐. 저 아가씨 바람났나봐."

양품점 앞을 스치며 브라자와 팬티만 입은 마네킹을 보고 한 소리였다.

앞에 탔던 아가씨가 문을 '팅' 닫고 내렸다.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다. 운전수가 뒤에 앉은 나더러 들으라는 듯이 말했다.

"저거 저, 엉덩이를 보니 틀림없이 어느 놈 하나 물려가는 꼬라지라고."

아가씨가 내린 장소가 유흥가여서인가 괜히 택시 안이 불편해졌다.

"아저씨, 저 내려 주세요."

택시가 횡 바람을 일으키며 멀어졌다.

늘 이상하게 '이게 아닌데'라고 느껴질 때는 이미 사태는 멀어지고 시간은 지나가 버린다.

그 아침은 다시 오지 않는다

류 선 자 (2기 상담원)

남성작가가 여성주의 소설을 쓰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남성의 시각만을 전부인 양 그려 놓는 편협한 소설이 하나라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적은 남성이 아니라 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사회구조를 가능케 하는 잘못된 관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여성문제에 대한 정확한 안목이 다만 여성문제에 동참하고 싶은 의욕만 가지고 소설은 성공할 수 없다. 이 작품이 바로 그렇다.

여성주의 소설을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소설 구상의 계기가 정말 궁금하다. 작가는 여성학 책을 20권이나 읽었다고 자위한다. 그 중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에서 착안한 세 여주인공을 설정한다.

수산업에 뛰어들지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횡포에 밀려 실패하고, 끝내는 복수심에 불타 자신의 목숨을 걸어 버린 정윤, 물론 사회적으로 여성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힘에 부치긴 하지만 치밀한 전략없이 단숨에 해치우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인은 강남 중산층 여성의 실상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 복잡한 가정환경을 수용하여 아버지에게 의존하는 대신 친어머니를 배신함으로써 죄책감을 갖고 있다. 새어머니의 불륜장면을 목격한 영향으로 남편과 원만치 못한 성관계를 가지며 남편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또 다른 세번째 인물 우경희는 작자가 가장 주의를 기울였지만 가장 어긋나는 인물이다. 독립적이고 성취욕이 강하며, 고통받는 자들과 힘없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넘치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현대의 여성운동가로 그려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경희를 통해 보여준 말과 행위는 남자 주인공인 선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만 쓰여졌다. 성문제상담소

소의 상담원이자 여성학 강사인 우경희가 강간 피해자를 돋는 역할에서 강간을 당할 상황에서 구출되는 설정은 작가의 큰 실수이다. 아르테미스가 강간범은 처벌하고, 남성들과는 형제애를 느끼고 있는 점과는 달리 우경희는 강간 당하기 직전에 자신을 구해 준 신문기자와 사랑에 빠진다. 우유부단하고 삶에 회의적이며 아내와의 갈등을 집을 나옴으로써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따뜻한 사건 해결사로 변할 수 있는가는 이해하기 어렵다.

작가는 여성문제를 다룬 소설을 쓰려했던 처음의 의도를 망각하고 멜로드라마식으로 전개시키는 문제점을 보인다. 자신의 외도를 미화하는 신문기자 선우에 대해 작자가 보이는 애착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경희식 사랑법’을 통해 성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을 왜곡하는 것은 작가가 남성주의적 시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공신력 있는 단체에 대한 작가의 무성의하고 진지하지 못한 인식이다. 성문제상담소가 묘사된 위치는 물론이거니와 발간되는 각종 자료집조차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같다. 성문제상담소의 상담원이 강간의 위기에서 구출되는 것은 작가의 작위적이고 추리적인 상황설정이 빛어낸 설득력 없는 행위이다. 소설의 소재를 찾기위한 조사를 하려면 진지하게 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여성들의 사기를 무턱대고 저하시키는 일은 없어야겠다.

왜 남성작가들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여성주의 소설을 쓰려 할까? 직접 체험이 가능하지 않는 세계를 그릴 때에는 제발 현실을 오도하거나 과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책을 통해 여성주의 시각을 얻으려 했던 남성들에게 이 책은 권하고 싶지 않은 책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1993년 ‘성문화 읽기’ 에서는…

1회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동아출판사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영화)

4회 『고개드는 여자』

테리 맥밀런 지음, 포도원
서편제(영화)

7회 『행복과 해방의 성교육』

헬무트 켄들러 지음, 대원사
로젤(연극)

2회 『우리 속에 있는 여신들』

진시노다 볼린 지음, 또하나의 문화
금지된 사랑(영화)

5회 『차탈레이 부인의 사랑』

D.H. 로렌스
온밀한 유혹(영화)

8회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

현실문화연구

3회 『혼자 눈뜨는 아침』

이경자 지음, 푸른산
소피의 선택(비디오)

6회 『성의 정치학』

케이트 밀레트 지음, 현대사상사
불의 가면(연극)

9회 『욕망의 오감도』

조성기 지음, 세계사

탁구공과 주먹

남순열 (3기 상담원)

이 글을 쓰게 되면서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은 중, 고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다. 어느 날 나는 탁구장에서 한 남자 대학생과 사소한 말다툼 중에 탁구공을 그 학생의 어깨에 던지고 말았다. 그리고는 순식간의 일이었다. 상상도 못했던 주먹이 나의 안면에 가해지면서 아픔보다는 그만 기가 질려 온몸이 얼어 붙은 듯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때의 무력감, 참담함, 절망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으랴. 가히 상상을 초월한 충격이었다. 그 후 얼마동안 나는 상처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척이나 위축되어 밖에도 못나가고 우울해 있었다.

이 사실을 안 부모님은 노발대발 흥분하셨고 마침내 그 학생은 나와 우리집 식구가 모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울면서 선처를 비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릇한 통쾌함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무척 든든하게 여겨졌다. 결국 학생의 신분이니 한번 용서

해 주겠노라고 치료비를 지불하는 선에서 모든 것은 무마되었다. 20여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그 때 그 일을 반추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어찌보면 다행스런 일이었을까?

지금 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에게서 당시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폭력, 분노, 계속되는 위축감, 우울감, 전혀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지던 일, 또한 가해자에게서 사과를 받아냄으로써 분노와 적대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일 등. 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사건으로 상담의 기본자세를 알게 해 주었다.

지금은 그 때의 기억들이 건드려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상처가 되어 내게 남아 있을 뿐이다. 나의 삶에 긍정적 가치를 더하며……

삶을 나누는 나눔이

최지영 (나눔이)

나눔이는 상담소에서 사무자원활동을 하는 이들의 이름이다. 원래는 자원봉사자라고 불리웠는데 '봉사'라는 단어가 주는 '박애적인 느낌'이 우리의 활동을 적절히 표현해 주기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자원활동가라고 부르다가 위기센터의 '지킴이'와 호응하는 '나눔이'로 최종 결정을 보았다.

우리가 나눔이의 활동을 봉사의 차원이 아닌 자원활동이라 규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폭력의 문제를 단순히 소수에게 덮친 불행한 사고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당면해 있고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할 때 자신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주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킴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원활동으로서의 나눔이의

역할은 자신이 자원하여 시작한 활동이고 여느 회사에 취직한 것처럼 임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와 소신이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된다.

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쫓기다보면 자원활동은 뒤로 미루게 되고 처음 시작할 때의 의욕과는 달리 정해진 날짜에 와서 일정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자기 규제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는 것,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발전이 되는 많은 활동들을 벌여 나가고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일부분으로 정착화시키는 것 등이 필요하다.

성폭력위기센터를 도와 주시는 분들

성폭력 위기센터에는 응급처치와 증거 채취를 해 주시는 위촉의 선생님과 심리회복을 도와주시는 위촉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김주필(김주필 의원)

문국진(법의학회 회장)

문영규(문영규 산부인과)

박금자(박금자 산부인과)

박소현(함춘여성클리닉)

박종민(PL 클리닉)

오세민(오세민 외과클리닉)

윤경(성남연세병원)

이나미(이나미 신경정신과)

장병기(장병기 산부인과)

정영덕(정영덕 성형외과)

최보문(강남성모병원 신경정신과)

감사합니다

삼성항공 카메라사업부에서 위기센터 증거채취용으로 카메라 2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위기센터 지킴이들의 한마디

● 실수로 비상벨을 눌러서 순찰차가 싸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동이 한바탕 벌어졌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 '세상의 좋은 아침'인가! 그렇다고 지난 밤이 신의 축복을 받은 날은 아닐텐데 전화가 없었다.

● 오늘은 17일, 왜 왔냐는 물음에 '21일인 오늘은 자신의 근무'라고 대답하는 태안이! 날짜 차이가 무려 4일이나 됨에도 착각으로 찾아온 태안이는 날짜 세는 것만 빼고 참 아는 것도 많았다.

● 지각을 하고 나니 웬지 찜찜하다. 지하철 타고 오는 동안 내내 안달을 했는데 집에서 조금만 일찍 출발했더라면… 자신에게 조금만 더 엄격했더라면 지각은 없었을텐데. 지킴이 여러분 엄격함을 한번 배워 봅시다. 그리고 성폭력 가해자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너 자신에게 엄격하라!"

● 길고 긴 밤을 무엇을 하며 보낼까? 하고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끝났다.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하면 더 빨리 끝날까? 나는 오늘 3명의 여자지킴이와 있었다. 여자지킴이 3명하고 근무한 남자지킴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 6시 30분 경에 한통화 왔지만 내 목소리를 듣는 순간 끊어 버렸다. 내 목소리도 괜찮다던데…

● 나는 한마리의 꿈틀거리는 벌레다. 요즘들어 가장 절실한 자각. 나는 무식하다. 두번째 자각. 인간으로서 안 갖췄으면 좋았을 게으름과 무식함을 몽땅 끌어안고 1994년을 시작하기는 쉽다. 상담소에 오면 열심히 사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것에 감사하며, 지킴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유효한 덕담입니다.

나눔터 알림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후원회원〉

권행숙, 홍순영, 한일은행 남대문지점
카네이션회

〈기부금 내 주신분〉

강홍준, 권오석, 김강자, 김금자, 문국진, 박경희, 박남순, 여성문화예술기획, 이종복, 장영복, 정경자, 추애주,

황장원, (주)현민시스템, 현혜순,

YMCA 청소년 상담실

순영-전화기, 장윤경-증거채취실 커튼

〈책기증해 주신분〉

한국여성연구소 박진숙

〈책 기증해 주신 출판사〉

아동교육문화연구회, 한국여성연구소,
(주)현민시스템

만든이 : 류한경, 연민이, 이계중, 이규화, 이시은, 장윤경, 최혜선

상담은 이렇게 합니다

■ 상담전화

일반상담: 02) 529-4271~2
위기센터: 02) 573-1888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일반상담: 02) 529-4271~2

위기센터: 02) 573-1888

법률 · 의료 · 심리상담

강간을 비롯한 성추행, 성적희롱, 음란전화 등의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정신과의사·산부인과의사·법조인·경찰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 일반상담 : 월 ~ 금, 오전 10 ~ 오후 5시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 위기상담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24시간

- 면접상담 : 화, 목, 오후 2시 ~ 5시

- 서신상담

여러분의 조그마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상담원** :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여성학 교육 / 상담원 교육)을 수료하면 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 **나눔이** :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보조, 자료정리, 번역, ...
- **위기센터지킴이** : 위기센터에 피해자가 전화를 하면
상담원, 병원, 경찰에 연결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물품기증** : 사무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 **후원회원** : 후원회원이 되면 소식지 「나눔터」와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상담소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비는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을 위해 쓰입니다.

■ 온라인 구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76-632	성폭력 상담소
농협: 037-01-194301	성폭력 상담소
조흥은행: 308-01-133092	성폭력 상담소

소식지 「나눔터」와 함께 하세요!!

후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1년 구독료 5천원을
위의 온라인 번호로 납입하신 후 본 상담소에 주소를 알려 주시면
계간 「나눔터」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